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201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12. 13.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D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8. 접수 제7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존재

1)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은 2017. 4. 13.경 D에게 12,900,000원을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5년, 이자율 연 9.03%, 지연이자율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 연 13%, 6개월 이상일 경우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 주식회사 E으로부터 D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남은 원리금을 양수받은 원고는 D를 상대로 202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26589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8. 1. ‘D은 원고에게 2,294,782원 및 그 중 1,182,500원에 대하여 202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8. 1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

1)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8. 12. 13. 사망하였다.

2)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 H이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8. 접수 제7905호로 ‘2018.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다. D의 채무 및 재산상태

1) D은 2022. 10. 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2018. 1.

25.자로 발생한 10,617,000원, 2018. 2. 26.자로 발생한 11,900,000원의 각 채무를, 주식회사 I에 대하여 2018. 1. 29.자로 발생한 5,100,000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J에 대하여 2018. 1. 19.자로 발생한 5,542,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2)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2022. 10. 1. 기준 1,382,651원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한은 2022. 4. 13.이나 2017. 11. 13.자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2. 7. 20. 원고가 D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있었던 2018. 12. 13.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1. 16.

무렵에도 D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D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D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 18. 접수 제7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 56.2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93분의 31.35

